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5. 22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5월 8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8년 5월 9일
- 다. 상정일자 : 제136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2008. 5. 22)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전산정보과장 정 원 배

### 가. 제안이유

마포구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민참여 이벤트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는 게시자료 삭제 기준을 완화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 개정 골자

- 1) 홈페이지 게시자료 삭제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자료심사 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정보화 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2항내지 제3항, 안 제7조)
- 2) 홈페이지의 이용자에 대한 각종 행사시 참여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 3) 구민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고자 마일리지의 운영 범위를 확대 시행함(안 제14조의3)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구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삭제할 경우 게시자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는 협행규정은 타 자치구 등과 비교하여 필요이상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게시자료 삭제기준을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정보화 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구민참여 이벤트 및 마일리지 운영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추후 개정지시문 등에 대해서는 자구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